

# 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1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8. 16.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개정이유

- 통장으로 지역행정에 참여하여 봉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나, 통장의 장기 재임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고,
- 반장의 경우 대체적으로 고유 업무가 없어 책임의식이 부족하며, 강제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위촉이 많아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으며,
- 현실에 맞지 않아 시행되지 않는 통·반장에 대한 「각종 잡부금 면제」 규정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반장제도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강제규정을 임의규정 (“반장을 둔다” ⇒ “반장을 둘 수 있다”)으로 개정함(안 제5조제1항).
- 나. 통장을 위촉할 때에는 희망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,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규정(안 제5조제2항).
- 다. 통장의 장기재임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, 다양한 인재가 지역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통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(안 제5조제3항).
- 라. 다만, 일부지역(공단지역, 주택지역 등)의 경우 통장위촉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,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실시하여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 횟수를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둠(안 제5조제5항).
- 마.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 (안 제5조제4항).
- 바. 현실에 맞지 않는 통·반장에 대한 「각종 잡부금 면제」 규정을 삭제하고,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 편의를 제공함(안 제9조).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붙임

사전예고결과 : 붙임

입법예고 : 2011.07.08. ~ 07.28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개정방침

통·반장 관련 참고 자료

현행조례(전문)

타지자체 조례

# **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**

안산시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4조의2제5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“통·반에 통·반장을 둔다.” 를 “통에는 통장을 두며,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신원사항과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통장을 위촉하여야 한다.” 를 “애향심, 책임감,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통장을 위촉하되,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.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거주기간 등을” 을 “거주기간을”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 중 “적임자가 없어 1회이상” 을 “2회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

제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9조(편의제공) 시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

1.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
2.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·반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, 통·반장의 임기는 공포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과		자치행정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과장 손 경식
	담당 직위·성명	자치행정계장 김 종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명석 (행정 3443)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..... 제4조의2제5항 에 따라 ..... .....
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통·반에 통·반장을 둔다.  ② 동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에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자로서 신원사항과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통장을 위촉하여야 한다. 다만, 각 호의 지역에는 거주지 또는 거주기간 등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위촉할 수 있다.	제5조(통·반장의 위촉) ① 통에는 통장을 두며,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.  ② ..... ..... 애향심, 책임감, 주민지도력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으로 통장을 위촉하되,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동장의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 할 수 있다. .... ..... 거주기간을 ..... .....
1. ~ 2. (생략)  3. 적임자가 없어 1회이상 통장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지역	1.~2. (현행과 같음)  3. 2회 이상 ..... .....
③ 통·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 할 수 있다.	③ ..... ..... 다만, 통장은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④ 통장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되어 그 통의 통장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 새로 위촉되는 통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</p> <p><u>&lt; 신설 &gt;</u></p>	<p>④ 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해촉되거나 통이 신설되는 경우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⑤ 통장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
<p>⑤ (생략)</p> <p>제9조(편의제공) 통·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무료열람과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.</p>	<p>제9조(편의제공) 시장은 통장이 동의 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동 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의 무료 제공</li> <li>2.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적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</li> </ol>